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9. 9.
행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8. 21. 배동수 의원 외 11인

나. 회부일자: 2026. 8. 24.

다. 상정일자: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26. 9. 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안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마포구는 현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등록한 유산 외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향토유산을 발굴·지정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 산재한 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전승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향토유산의 기초조사와 지정·해제, 보존·관리 및 전승·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마포구 고유의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향토유산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향토유산의 발굴·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향토유산의 지정·보존·관리·전승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소유자 등의 신청 및 동의, 위원회 심의를 통한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와 지정서 발급, 고시·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향토유산의 관리주체, 보존·관리 및 향토무형유산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향토유산의 발굴·조사·보존·전승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참고사항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 2026. 8. 24. ~ 8. 28.(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① 조례의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배동수의원 외 11인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는 현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등록한 유산 외에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향토유산을 발굴·지정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에 산재한 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전승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향토유산의 기초조사와 지정·해제, 보존·관리 및 전승·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마포구 고유의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향토유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향토유산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 안 제4조는 향토유산 발굴 및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전문가·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 또는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향토유산의 지정·해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향토유산 지정 신청, 소유자 등의 동의, 위원회 심의, 지정서 발급과 지정 해제 및 고시·통지 절차를 규정함.
-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향토유산의 관리 주체와 보존·관리, 향토무형유산 보호·육성 및 소유자 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함.
-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향토유산의 발굴·보존·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향토유산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

③ 법적 타당성 검토

-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개념을 규정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마포구가 국가 또는 서울시 지정·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을 자체적으로 발굴·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공개·활용과 국민의 문화향유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와 함께 교육·전시·공연·체험 및 홍보 등 활용사업을 규정한 것은 현행 국가유산 정책 방향과도 부합함.
-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향토유산 지정형, 일반 문화유산 정책형 또는 무형유산 특화형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유형	자치구	주요 특징
향토유산 지정형 (10개)	강남·강북·노원·도봉·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구·중랑	자치구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하고 위원회 심의·관리·지원 절차를 규정
일반 문화유산형 (3개)	강동·금천·동작	문화유산 기본계획·기초조사·교육·돌봄·재정지원 중심
무형유산 특화형 (2개)	종로·송파	지역 무형유산의 보존·전승·진흥에 중점

- 서울시 10개의 자치구에서도 향토유산 지정·보호 및 경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④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마포구 지역 유산의 발굴·관리 기반 미비
 - 현재 마포구에는 국가 및 서울특별시 지정·등록유산 26건이 있으며, 이중 14건(53.8%)이 2020년 이후 지정·등록되어 최근에도 새로운 유산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음

- 지역문화자원으로 당인동 부군당과 풀무골 대장간 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 향토문화 지원사업(마포문화원 주관) 8건에 141,200천 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향토유산 후보목록·기초조사·지정 검토자료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축제·제례 등 행사 지원과 유산 자체의 가치조사·지정·보존관리는 정책 목적과 관리 수단이 다르므로, 현행 문화사업 지원만으로는 훼손·멸실 및 전승 단절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국가 또는 서울시 차원의 지정·등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마포구의 역사와 생활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선제적으로 발굴·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건축물이나 유적 등 유형적 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과 전통 기술·예술·의식 등 무형유산까지 포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토유산을 교육·전시·공연·체험·관광 콘텐츠 등과 연계할 경우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마포구의 관광·문화자원 다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향토유산 및 주변 환경 훼손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개발과 지역문화 보존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음.

5 검토 및 유의사항

- 향토유산 지정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
 -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또는 지역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등급·평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향후 지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또는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5조는 향토유산의 조사·연구, 수리·정비, 전승, 교육·전시·체험 등에 폭넓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 자부담 비율, 지원 한도, 사업 우선순위 및 성과평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사유재산권과의 조화가 중요함.

- 본 조례안은 지정 시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함. 다만 지정 이후 안내판 설치, 진입로 정비, 보호시설 설치 및 정기 점검 과정에서도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향토유산 지정 이후의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함.

- 향토유산을 다수 지정하는 것 자체보다 지정 이후 정기 점검, 기록관리, 훼손 방지, 전승자 관리 및 활용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담당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가운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마포구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지역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향토유산의 기초조사부터 지정·해제, 보존·관리, 무형유산 전승 및 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토유산 지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수반될 수 있는 만

큼 지정기준과 평가 절차를 객관화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지원 대상·범위·한도 및 사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사업과 향토유산 보존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절차를 충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범위에 비추어 법적 타당성과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지정기준·위원회 운영·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마포구 국가유산 지정·등록 현황

[국가유산포털(국가유산청) 기준]

연 번	종목	명칭	상세주소	지정일	분류	수 량/ 면적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1	보물	안중근의사 유묵 - 오노봉위필삼 상작연지청천일장 지사아복증시	상수동, 홍익대학교	72.08. 16	기록유산/서간류/ 서예/서예	1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박물관
2	보물	월인석보 권1~2	신수동, 서강대학 교 도서관	83.05. 12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	2 권 1 책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도서관
3	보물	양사언 초서	서강대학교박물관	10.01. 04	기록유산/서간류/ 서예/서예	1축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박물관
4	사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 마포구 토정 로 6 (합정동)	97.11. 11	유적건조물/교통 통신/교통/수상교 통	35,54 8㎡	서울시 등	천주교서울 대교구기념 관
5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의령남씨가전화첩	상수동, 홍익대학 교	16.04. 07	유물/일반회화/기 록화/계획도	1건 5 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박물관
6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청자상감노압문용 두주자	서울시 마포구	22.09. 08	유물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7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청자 퇴화 능화 문 매병	서울시 마포구	22.12. 08	유물/생활공예/토 도자공예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8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청자 표형 주자	서울시 마포구	22.12. 08	유물/생활공예/토 도자공예/청자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9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마포 석불사 신 중도	서울시 마포구	23.04. 06	유물/불교회화/탱 화	1점	대한불교조 계종석불사	대한불교조 계종석불사
10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마포 석불사 아 미타불회도	서울시 마포구	23.04. 06	유물/불교회화/탱 화	1점	대한불교조 계종석불사	대한불교조 계종석불사
11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마포 석불사 치 성광여래회도	서울시 마포구	23.04. 06	유물/불교회화/탱 화	1점	대한불교조 계종석불사	대한불교조 계종석불사
12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청자 양인각 연 지동자문 완	서울시 마포구	23.09. 14	유물/생활공예/토 도자공예/청자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13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청자 상감 파어 문 매병	서울시 마포구	24.02. 08	유물/생활공예/토 도자공예/청자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14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분청사기 선각박 지 모란절지문 호	서울시 마포구	24.05. 30	유물/생활공예/토 도자공예/분청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15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	백자 청화 운룡 문 호	서울시 마포구	24.07. 25	유물/생활공예/토 도자공예/백자	1점	금성문화재 단	금성문화재 단
16	서울시 무형 유산	밤섬부군당도당굿	서울시 마포구	05.01. 10	무형유산		밤섬부군당 제 보존위 원회	마포문화원
17	서울시 기념 물	망원정 터	서울 마포구 동교 로8안길 23 (합정 동)	90.06. 18	자연유산/명승/문 화경관/건물지	토 지 1,427 ㎡	마포구, 기 획 재 정 부, 서울시 등	마포구
18	서울시 민속 문화유산	용강동정구중가옥	서울 마포구 큰우 물로2길 22 (용강 동)	77.03. 17	유적건조물/주거 생활/주거건축/가 옥	건물 4 棟, 토 지	정선영 외 2	정선영 외 2

연 번	종목	명칭	상세주소	지정일	분류	수량/ 면적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406.5 ㎡		
19	서울시 민속 문화유산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서울시 마포구 독 막로12안길 25-18	17.08. 10	유물/기타종교회 화/무속화/무속화	8점	당인리부군 당보존회	마포구
20	서울시 등록 문화유산	독립신문 유인물 (평양)	서울시 마포구	21.03. 11	등록문화유산/기 타	1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21	서울시 등록 문화유산	마포 석불사 괘 불도	서울시 마포구	23.04. 06	유물/불교회화/괘 불화	1건 4 점	대한불교조 계종 석불 사	대한불교조 계종 석불 사
22	서울시 문화 유산자료	마포 석불사 독 성도	서울시 마포구	23.04. 06	유물/불교회화/탱 화	1점	대한불교조 계종 석불 사	대한불교조 계종 석불 사
23	국가등록문화 유산	서울 창전동 공 민왕 사당	창전동, 공민왕사 당	06.03. 02	등록문화유산/기 타/종교시설	1동(1 층), 연면적 15.65 ㎡	국가유산청	마포구청
24	국가등록문화 유산	서울 서교동 최 규하 가옥	서울 마포구 서교 동 467-5번지	08.10. 10	등록문화유산/기 타/인물기념시설	1동, 지상2 층 지하1층, 건축면 적 142.6 8㎡, 연면적 330.0 5㎡	서울시	서울시
25	국가등록문화 유산	국문정리(2012-1)	서강대학교	12.12. 24	등록문화유산/기 타/동산	1권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 관
26	국가등록문화 유산	서울 동교동 김 대중 가옥	서울시 마포구	25.12. 30	등록문화유산/기 타/업무시설	토지 1 필지 (573.6 ㎡), 건물 2 동(연 면적 785.8 3㎡)	박천기 외 2인	박천기 외 2인

[별표 2] 관계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 다. (생략)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 9. 14.>

⑤ ~ ⑬ (이하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 9. (이하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

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이하 생략)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7.] [법률 제21585호, 2026.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 12. (이하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